

증권대차 중개 서비스 거래 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증권대차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증권대차중개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증권대차중개서비스란 대차중개 신청을 한 대여자의 보유종목으로 대여 POOL을 구성한 후 차입자의 차입 신청이 있을 때마다 대차 중개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증권대차거래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대여 POOL 내에서 주식을 전문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전문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당사에게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 민원 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대여 중인 주식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 대여 중인 주식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매매 거래일 정규 시장 및 시간외시장 시간에 현금 주식과 동일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계좌도 대차중개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신용 및 대출 계좌의 원 담보 증권은 대차중개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3. 대여 중인 주식의 권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여주식으로 인한 유상/무상 증자, 배당의 경제적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반환을 신청하여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민원 상담 분쟁조정 연락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hanwhawm.com> >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광장 > 전자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 (080-851-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 (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금소법상 자료열람교유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고객님의께서는 금소법 제21조의 2에 따라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방법
 - ☑ 고객님의께서 향후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에 요청하시거나, 금융권 공동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을 통해 행사 가능합니다.

《 목 차 》

1. 대여(대차) 중개 거래 개요
2. 대여중개약정 신청 및 해지
3. 대여거래의 실행, 종료 및 반환
4. 대여수수료
5. 대여잔고의 권리
6. 대여거래에 대한 고객 통보
7. 기타
8. 보고의무

1. 대여(대차) 증개 거래 개요

- 1) 대여(대차)증개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일정 대여 수수료를 받고 해당 증권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 2) 당사의 대여(대차) 거래는 거래 기간의 종료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대여자와 차입자 중 일방의 거래 종료 통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개방형 거래입니다.
- 3) 대여(대차)증개 거래에 의해 대여자는 대여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 조달을 통해 인도부족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 4) 대여(대차)증개 거래의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 중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증권으로 합니다.

2. 대여 증개 약정 신청 및 해지

1) 대여 증개 약정 신청

① 대여증개약정을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 증권은 당사 대여POOL에 포함 됩니다.

※대여POOL이란 대여자의 대여신청에 따라 대여가 가능한 보유 증권 집합을 의미 합니다.

② 대여증개약정 신청은 종합매매 계좌(11)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점 방문, 전화, 당사 HTS 등을 통해 가능 합니다. 종합매매 계좌 중 신용설정계좌, 대출계좌, 스타론계좌, 실명미확인계좌, 비거주자계좌, 사고등록(반송포함)계좌, 미수계좌, Wrap 계좌, 선물옵션 대용지정 계좌, 해외주식 전용저축계좌, 통합계좌, 폐쇄계좌, 신용 등급이 정상이 아닌 계좌, 분리 과세 신청 주식 보유 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거래 약정 신청이 불가 합니다.

2) 대여 증개 약정 해지

① 대여증개약정의 해지는 영업점방문, 전화, 당사HT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대여증개약정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잔고 반환을 신청하거나 대여잔고 매도체결 후 대여반환 일(신청반환의 경우 신청일 +3 영업일, 매도반환의 경우, 매도증권의 결제일) 이후부터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여 실행, 종료 및 반환

1) 대여 실행 (체결)

① 대여실행(체결)은 차입자의 증권의 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 대여POOL 내에서 실행됩니다. 대여 체결 순서는 종목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 수량이 많은 순서로 1,000주에 달할 때까지 우선 배 정하고, 1,000주를 초과하는 신청 수량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주, 5,000주, 잔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체결 수량을 배정 합니다. 대여신청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 시점이 앞선 대여계좌가 우선합니다. 대여신청 시점 또한 동일한 경우는 계좌개설 시점이 앞선 대여자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단, 안정적인 대여 POOL 운영 정책에 따라 체결 기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체결 기준을 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HTS에 게시합니다.

② 신용 및 대출 계좌의 원 담보 증권은 대여실행이 불가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증권에 대해서만 대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2) 대여(대차)거래의 종료

① 대여자가 대여증권에 대해 매도반환 또는 신청반환 요청을 하거나, 대차중개약정 해지 시 대여 (대차) 거래가 종료됩니다. 또한 차입자가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여(대차)거래가 종료됩니다.

3) 대여증권의 반환

① 대여증권 신청반환

ㄱ. 신청반환이란 대여자가 대여된 증권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대여된 증권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수량에 대해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ㄴ.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일 포함 4 영업일 이내에 현금증권이 입고됩니다.

ㄷ. 반환신청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영업점 방문, 전화, HT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ㄹ. 반환신청의 취소는 신청일 당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② 대여증권 매도반환

ㄱ. 대여증권 매도반환 신청이란 대여자의 매도 주문 후 대여잔고가 체결됨으로써 회사에 반환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ㄴ. 대여잔고는 정규 시장 및 시간외시장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시간에 대여매도상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ㄷ. 대여잔고의 매도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대여반환일(매도반환 주식의 결제일)이내에 매도 체결 수량 만큼 상환 결제 처리됩니다.

ㄹ. 매도반환 신청은 영업점 내점, 전화, HTS, MTS 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대여수수료

1) 대여수수료는 대여 기간 동안 『일별 대여잔고수량 ×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 / 365(윤년의 경우 366)』로 하며 원미만 절사합니다.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가 발생해야 지급되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그 증권의 최근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증권 등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중개기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대여수수료율은 대여 증권의 희소성 및 종목별 시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여수수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 됩니다.

3)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 월말에 산정하여 다음 월 16일에 지급하며, 해당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4)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대여자가 개인인 경우, 당사 에서

계좌별로 대여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세(20%)와 기타소득지방 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후 대여계좌에 지급합니다. 단, 대여수수료가 계좌 단위 별로 매년 1월 ~12월까지 지급된 총대여수수료의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대여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되는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5) 기타소득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6) 대여종인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거 대여종목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 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대여종인 증권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 모든 주주 배당소득세 9% 원천징수, 종합과세대상자 5% 세액공제, 2017년까지 결산 분에 한함)에서 제외됩니다.

5. 대여잔고의 권리

1) 대여잔고에 발생하는 제반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증자 및 배당 등에 의한 배정수량 산정 시 대여잔고와 대여를 제외한 수량에 대해 각각 산정하므로, 대여 전 보유 수량으로 산정한 것과 단수 주(대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식배당, 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유상증자, 주주채권청약, 감자, 유상감자, 회사분할, 액면분할, 액면병합, 합병 등 : 당해 증권의 권리 발생시 권리기준일 이전에 반환하되, 대여자가 회사의 반환 이전에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대여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 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증서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대여자 에게 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차입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여 상환해야 하는 경우로써 시장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서 상장일 당일에 매수하지 못한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인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대여 중인 주식은 매수청구권 행사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까지 대여 상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여야 해당 잔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공개매수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2 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증자, 배당 등으로 단주 처리 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각각 산정 하므로, 대여 전 보유수량으로 산정한 것과 단수주(대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대여거래에 대한 고객 통보

- 1) 통지방법: 대여거래 발생 시 SMS를 통해 통보해 드립니다. 또한 HTS,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잔고 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통보내역: 대여중개약정, 해지, 알림 변경, 대여실행 및 대여상환(대여자 요청에 의한 상환, 차입자에 의한 상환, 선 상환결제), 대여수수료입금 내역을 통보 해드립니다.

7. 기타

- 1) 대여 실행 및 상환 시 매입 단가는 대역자가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며, 대여 상환 시 매입일은 매수(취득)일자로 관리됩니다.
- 2) 대여거래 당일에 해당 계좌에서 당일의 법원명령, 압류 등의 사유로 사고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대여거래 기간이 '0'일로 산정하여 대여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3) 증권대역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증권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 헤지 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 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보고의무

5%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와 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제도 대상자가 대차거래를 할 경우,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반환청구권)로 변경되어 변경보고의무가 발생되오니 체결 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설명직원 확인]

한화투자증권 _____ 지점(직책) _____ (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설명직원:  (인/서명)